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,510,484,557 | 225,314,537 |
| 일 반 회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,124,036,811 | 183,721,104 |
| 특 별 회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386,447,746 | 41,593,432  |
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       | 316,851,862   | 9,505,556   |
|               | ① 상 수 도 사 업               | 154,002,514   | 4,620,075   |
|               | ② 하 수 도 사 업               | 162,849,348   | 4,885,480   |
|               |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         | 1,069,595,884 | 32,087,877  |
|               | ① 의 료 급 여 기 금             | 449,466,335   | 13,483,990  |
|               | ② 수 질 개 선                 | 5,000,113     | 150,003     |
|               | 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 | 342,027       | 10,261      |
|               | 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      | 1,172,352     | 35,171      |
|               | ⑤ 택 지 개 발 사 업             | 224,392       | 6,732       |
|               | ⑥ 교 통 사 업                 | 29,894,909    | 896,847     |
|               | ⑦ 광 역 교 통 시 설             | 4,754,707     | 142,641     |
|               | 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        | 26,293,805    | 788,814     |
|               | ⑨ 산 업 단 지                 | 5,443,326     | 163,300     |
|               | 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       | 58,109,469    | 1,743,284   |
|               | ⑪ 도 시 철 도 사 업             | 282,578,880   | 8,477,366   |
|               | ⑫ 소 방                     | 206,315,569   | 6,189,467   |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39,759,342천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 “154,0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  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 “205,2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